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<p>중산층 주거혁신 <b>NEW STAY</b> 정책</p>	<b>보 도 자 료</b>		 <p>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</p>
	배포 일시	2015. 11. 16(월) 총 3매(본문2, 붙임1)	
	담당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, 사무관 이재민</li> <li>• ☎ (044)201-3365(친환경주택 건설기준)</li> <li>• 녹색건축과 과장 엄정희, 사무관 박덕준</li> <li>• ☎ (044)201-4094(에너지절약 설계기준)</li> </ul>	
2015년 11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6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,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주택사업자 서류제출·사업기간 지연 부담 감소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’(고시)\*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7일부터 20일간(기간 11.17~12.7)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\* 이하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

□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(“14.9.3)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 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(“14.12.23)하고,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.

○ 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\*되어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어왔다.

\* 「주택법」의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(고시)’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의 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(고시)’ 등이 각각 적용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’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추가하였다.

<참고>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추가되는 ‘에너지절약 설계기준’ 의무사항

구 분		주 요 내 용
기계부문 의무사항	설계용 외기조건	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 규정(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위험율 25% 등)
	열원 및 반송설비	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것 등
전기부문 의무사항	수변전 설비설치	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할 것
	간선 및 동력설비	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고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’을 개정하여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
- 사업자는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되어 이전보다 수수료,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,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, 2015년 12월 공포 후,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.
-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2월 7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 / 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\* 의견제출처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
(전화: 044-201-3365, 3373, 팩스 044-201-5684)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재민 사무관(☎ 044-201-33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

## □ 추진배경

-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을 준수토록 규정('09.10~)

## □ 주요내용

- (대 상)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(설계조건) 에너지사용량을 40%이상(전용 60㎡이하는 30%) 절감
  - ※ 창호 및 벽체의 단열성능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되, 설계기준 불충족시 친환경주택 평가방법에 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달성하도록 유도
  - (의무사항) 고효율 설비(변압기 등)·조명기기, 대기전력차단장치, 일괄 소등스위치, 실별온도조절장치 및 절수형설비 등
  - (권장사항) 친환경 자재 사용,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,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및 신·재생에너지의 설치 등
- (사업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)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, 감리자가 준공전 이행여부 확인

## □ 평가개요

- (평가항목)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, 급탕, 열원, 전력 등 4개로 분류하고, 총 30여개 항목\*
  - \* 외벽, 창호, 현관문, 방화문, 발코니외측 창호, 최상층 지붕, 최상층 바닥, 창면적비, 창호기밀, 열원설비,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
- (평가방법) '09년 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(세대 및 단지)의 단열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(CO<sub>2</sub> 저감량) 평가